연구비 부정은 명백한 범죄

- 연구비 특정감사 사례 -

2019. 3. 27.

감사총괄팀장 김 현 태



연구비 부정 적발 급증... 빙산의 일각? (KBS 9시 뉴스, 2018.10.17.)









1. 국가 R&D 예산

국정과제

국정과제 36: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임기 내 두 배 수준인 2조 5천 억원으로 확대하겠다" 1.27조원('17) → 2.5조원('22)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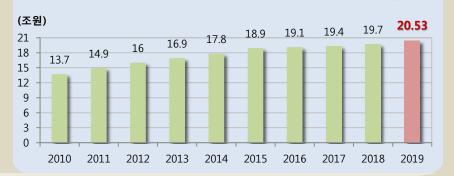


<'도전하는 내일, 사람을 향한 꿈' 미래 괴학자와의 대화 행사, 2017228, 연합뉴스>

국가R&D 예산 중액

"내년 정부 R&D 예산 20.53조...올해 대비 4.4%个" (머니투데이, 2018.12.10.)

R&D 20조원 시대 개막 2014년 이후 증가율 1%대유지, 2019년 전년대비 4.4% 증가



정부... 기초연구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과학입국을 향해 나아 갈 것 강조

국회...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해 R&D 투자 중요성 강조

2. 우리의 역할

중앙일보

[비즈 칼럼] 정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열며

[중앙일보] 입력 2018.08.30 00:02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 시대를 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R&D 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3.7%가 늘어난 20조4000억원 규모로, 2008년 10조원을 넘긴 이후 11년 만이다.

'R&D예산 20조원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최고치 경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래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R&D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의지이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던 R&D 예산은 최근 3년간 1%대 증가율로 정체기를 거쳤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나라 R&D 투자가 정체기에 머무는 동안에도 기술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돼왔으며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신기술을 통한 경제성장과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예산만 보더라도 일본은 R&D 예산을 전년 대비 22%, 미국도 7% 이상 확대했다.

내년 정부 R&D 예산 20조원 달성은 '혁신성장 가속화'와 '국민 삶의 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먼저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R&D뿐 아니라 기술-인력-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해 데이터·A·수소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에 역점을 두었다. 연구자 주도 창의 기초연구 사업에도 올해 대비 19% 증가한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R&D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R&D 20조원 시대를 열며, 기대감만큼이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R&D 성과는 일반적으로 투자 규모에 비례하지만, 그보다 연구자들의 책임감과 절실함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재능 있고 현신적인 연구자들에게 20조원의 R&D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 연구 현장의 부정비리 방지는 물론 그동안 외부에서 지적된 '경직된 연구환경', '나홀로연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R&D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7월 말 발표한 '국가 R&D 혁신 방안'이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R&D 혁신을 통해 국가&D시스템 전반이 '사람'을 중심으로 고도화돼야 하고, 파괴적 혁신 역량을 축적해 나감은 물론, 전략적인 R&D 예산 투자를 통해 값진 열매를 수확해내며, 그 열매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자리 잡아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R&D 20조원이 부디 국민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씨앗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 우리의 현실은?



국 회

· 국가 연구비 부정 집행에 대한 척결 요구



국무회의

· 연구비 비리로 R&D 효율성 저해, 국민신뢰 저하, 경제발전의 초석 붕괴 우려



감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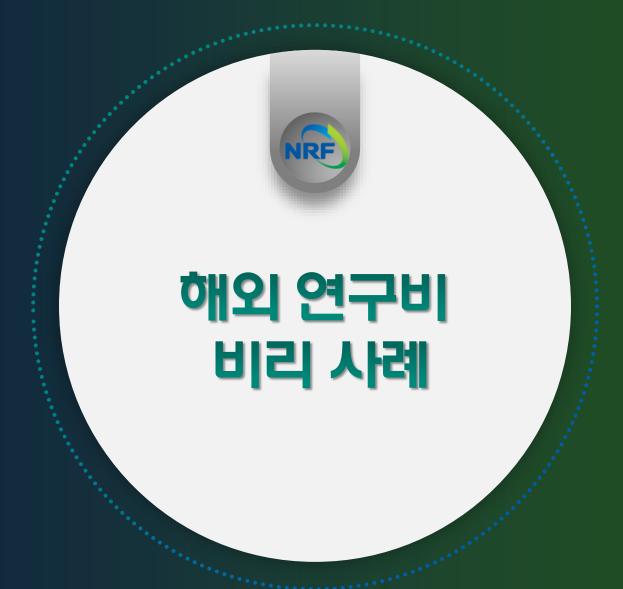
· 최근 5년간 감사결과 연구비 부정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 5년간 | 구분 | 기획 조정 | 선정평가 |
|------|------|---------|----------------------|
| 감사원 | 지적건수 | 45건 | 64건 |
| 감사결과 | 지적내용 | 기획 부실 등 | 불공 정 선정 등 |

| 연구비 집행 | 성과 관리 | |
|----------|-----------|--|
| 387건 | 52건 | |
| 연구비 부정사용 | 기술료 관리 미흡 | |

국가 청렴도 OECD 평균으로 올라가면, 경제성장물 0.65%, 66억달러 GDP상승

출처: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현대경제연구원, 2015.9)







1. 해외 연구비 비리 사례



1 Haifang Wen

[NSF, 국세청, 범죄수시국 등]

- 워싱턴주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동생 부부와 함께 6개의 유령회사 설립
- 위조된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 수주 (NSF 등으로 30개 과제, 약 800만 달러)
- 감사 과정에서 연구비 휭령 정황 포착

연구비 황령 등

• Wen 등 관련자 세 명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 및 벌금 100만 달러



② Carla Rathmann

[범죄수사국]

- 미주리대학교의 연구비 관리 직원
- 유령회사 설립 후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 처리로 10여년 동안 78만 달러 연구비 횡령
- 휭령한 연구비로 도박, 여행, 전자제품 구매, 치과치료 등 남편과 함께 사용

연구비 황령 등

- 징역 4년 (가석방 없음)
- 벌금 78만 달러
- 남편은 부당이익 누렸으나 불기소



2. 해외 연구비 비리 사례



3 Yale University

[NSF 등 8개 기관 합동감사]

- 연구비 잔액 집행을 위해 연구와 무관한 연구비 청구 · 사용
-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급여 지급

연방정부 연구비규칙 위반 및 부정 청구



- 연방정부와 예일대학 민사합의
- 예일대학교 벌금 380만 달러

4 Northwestern Univ.

[NIH 감사실 특정감사]

- 연구비를 전문가 자문료, 식대 및 여행경비 등으로 부정 사용
- 노스웨스턴대학교는 연구비 부정 청구 고의로 묵인

연구비 부정 청구



- 노스웨스턴대학교 벌금 293만 달러
- Charles Bennetts 벌금 48만 달러

3. 해외 연구비 비리 사례



① 와세다대 A교수

[대학 자체 조사위원회]

-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바이오 관련 기업과 허위 거래
- 가공의 연구원을 내세워 인건비 허위 지급 처리
- 업체와의 거래전표는 있으나 물품 납품 관련 납입전표 부재
- 4,000만엔 국가에 자진 반환 결정

[재발방지 대책]



- 연구비 관리책임자가 연 4회 자체 감사
- 시약 및 물품 납품 확인 감독기관 설치
- 아르바이트 듕 연구원 근무실태 감독
- 내부 고발창구 정비 및 신고자 보호

② 통경공대 B교수

[대학 자체 조사위원회]

- 거래업체와 공모해 허위 회계서류 제출·처리, 이를 통해 고액의 예치금 적립(일부는 B교수가 사적으로 사용)
- 연구원 허위 고용 및 급여 부정 수급(비서가 통장 관리)
- B교수 및 비서 징계해고, 업체는 거래 정지 및 형사고발

[재발방지 대책]



- 업체에 서약서 징구 (대학 규정 준수, 감사 협조, 처분 수용, 부정신고 의무)
- 부정 가담 업체는 거래중지, 공개 등
- 비상근 연구원 관리 · 감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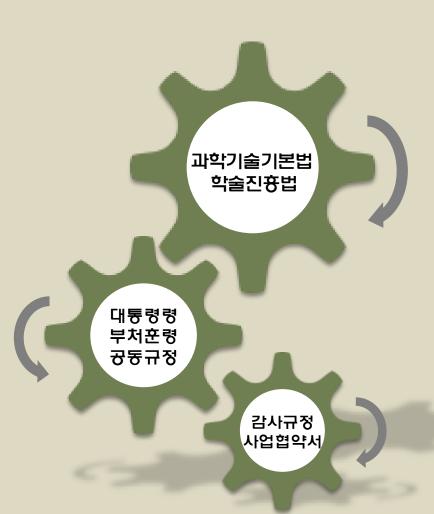








1. 연구비 비리관련 법령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통관리 금지
-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 시 사용금액의 5배 이내 **부가금 부과** · **징수**
- 연구자가 연구비를 유용· 횡령 또는 사기의 경우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휭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휭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감사시스템 구축



특정감사결과를 토대로 형사고발장 직접 작성

3. 다양한 접근방법 활용

감사 준비 (1)

· 제보 내용을 토대로 연구비 부정집행 유형 분석



예비 조사 (2)

-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연구관련 자료 조사 연구재단 과제정보(eRnD), 연구비 정산정보(Ezbaro), 범부처 수행과제 정보(NTIS), 연구원 정보(KRI) 등
- · 신고자 사전 면담을 통한 세부자료 확보 학생인건비 수급 은행계좌, 구체적인 진술 확보 등

처분 요구 (4)

- · **행정처분** 환수금액 확정 및 참여제한
- · **사법처리 의뢰**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수사의뢰 조치

특정 감사 (3)

- · 예비 조사 자료와 산학협력단 보관 자료 대조 연구비 항목별 집행내역 비교 및 정산서류 확인
- · **재학생, 졸업생 등 면담(대면 또는 유선)** 인건비 공동관리는 학생 진술을 통해 혐의점 발견
- · 연구책임자 면담 및 부정행위 적발

4. 감사 중 장애요인 극복

장애 요인

[증거확보의 어려움] 학생연구원의 면담 거부 및 교수의 조직적 은폐 시도

[주관연구기관의 미온적 협조] 민간의 연구비 집행 내역 등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동의

[범죄열람표 작성의 어려움] 피해 금액 특정 및 고발장 작성

장애 극복

- ▷ 학생연구원 진술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하여 학생 설득 및 2차 피해 발생 예방
- ▷ 사실에 근거한 진술 확보를 위해 학생이 원하는 **장소(학교 밖)**에서 **면담**(2인 2개조)
- ▷ 연구재단 감사인 연구현장 방문 매뉴얼에따라 행동하여 대상기관의 신뢰성 확보
- ▷ 감사의 목적, 피해 사항 등을 대상기관에 인지시켜 민간의 지원 내역 필요성 강조
- ▷ 유효성 검사 등을 이용하여 확보한 계좌정보로 부터 정확한 피해 금액 특정
- ▷ 검찰청 수사관, 변호사 등의 교육을 통해 고발장의 필수 항목, 표현법 등 수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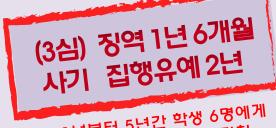




인건비 궁동관리 - 직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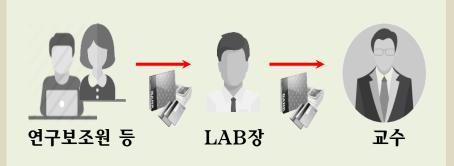


- [신고내용]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 [감사결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범죄행위 확인 및 자료 확보
 - 학생인건비 수급전용 통장, 비밀번호 및 도장 직접 관리
 -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국내여비, 연구수당 등을 공동관리
 - 본인 과제 이외 타 교수 과제에도 학생을 참여시켜 인건비 공동관리
 - 교수는 연구비 부정행위 부인, 학생들 면담을 통해 범죄행위 확인
- [처분요구] 형사고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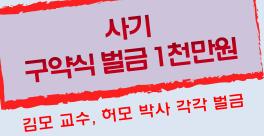


2011년부터 5년간 학생 6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3.5억원 편취

<u>인건비</u> 공동관리 - 제3자 개입



- [신고내용]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허위 학술대회 개최 등
- [감사결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범죄행위 확인 및 자료 확보
 - 김모 교수와 허모 박사가 학생인건비 수급전용 통장, 카드 직접 관리
 - 학생인건비와 국내여비 등을 공동관리
 - 사건 은폐를 위해 보관하던 통장을 되돌려주고 허위 진술토록 지시
 - 본인이 회장인 OOOO학회의 학술대회 개최 경비 부정 집행 사실 확인
- [처분요구] 2명 형사고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



3. 죄명 변경으로 재고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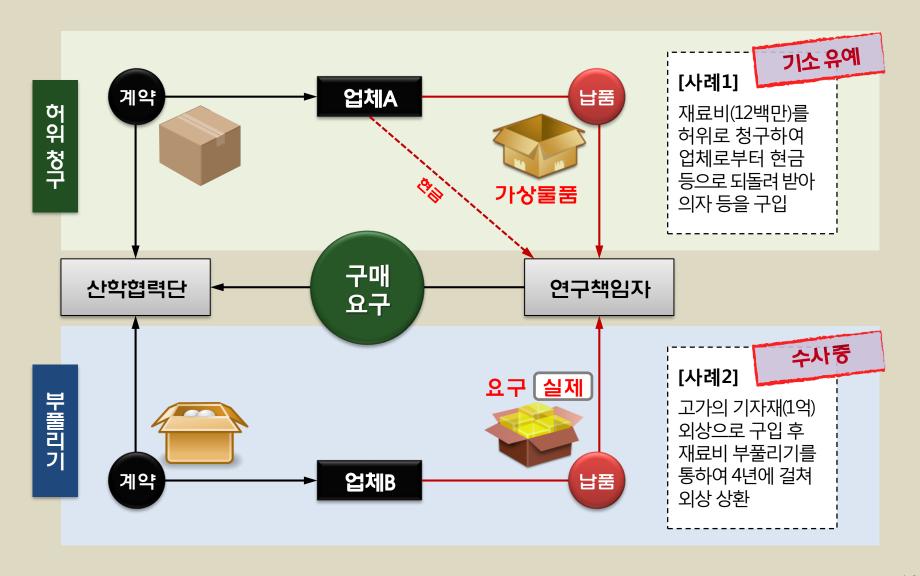
2018.8.30.

□ □ 대 조모 교수

감사결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확인 2016.7.11.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으로 형사고발 '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7.7.5. 2017.8.2.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2017.9.22. 항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 기각 결정 범죄혐의를 사기(형법 제347)로 변경하여 재고발 2017.11.28.

검찰 수사 후 사기로 법원 기소(현재 재판 중)

4. 재료비 허위청구 사례



5. 최근 3년간 특정감사 현황

연구자 30명 형사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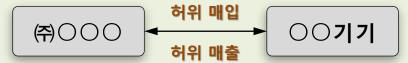
연구재단 설립 이후 형사고발 적극 추진

(3년간 74억원 적발, 연구자 30명 수사의뢰 · 고발)

| 구분 | ′16 | ′17 | ′18 | 합계 |
|---------|-------|-------|-------|-------|
| 금액(백만원) | 2,244 | 2,395 | 2,758 | 7,397 |
| 피고발인(명) | 6 | 7 | 17 | 30 |

※ 9건(12명)은 종결, 나머지 사건은 현재 수사/재판 중

회사운영비로 연구비 집행



부산 소재 ㈜ OOO은 OO기기와 공모하여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비 중 약 5억원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 (한국연구재단 형사고발 후 폐업 신고)

현금 7,300만원 적발



광주 소재 OO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 특정감사 현장점검 시 교수 연구실 캐비닛에서 현금 7,300만원 적발

외국인 교수 추방

전주 소재 OO대학의 외국인 교수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발설 시 본국으로 보내겠다" 협박



본인이 이집트로 추방됨







1. 연구비 집행 제도개선

- •연구실 운영비를 편법 없이 정당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연구실 유영에 필요한 경비(연구실유영비)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운영비'(신설)로 묶어 연구활동비 내 편성
 - < 연구비 사용항목 체계 개선 >

| 현행 | | 개선 | |
|-------------|---|-------|---|
| 연구 활동비 | 국외출장비 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시험분석비 특허 경비 등 | 연구활동비 | · 출장비(국내+국외) · 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 시험분석비 · 특허 경비 등 |
|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출장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회의비식대 | | 연구과제운영비 :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대, 연구환경유지비, 연구실운영 비용 (직접비의 5%이내) |
| 연구장비 재료비 | ·기기·장비(연구용 컴퓨터) 등 | | •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u>실수</u>·<u>부주의에 의한</u> 연구비 부적정집행</u>'과 '<u>악의적인 연구비 부정</u> 집행'으로 차별화하는 제재조치 매뉴얼(안) 마련

- 증빙서류 미비, 규정 미숙지로 인한 (1) 실수.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등 ⇒ 부적정집행한 연구비를 회수(환수와) 부주의로 인한 구별)하되, 연구자의 참여제한 등 부적정집행 제재조치는 면제 · 서류조작,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연구과제 (2)외의 목적으로 사용 및 부당한 이익을 악의적 연구비 챙긴 경우 ⇨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등의 부정집행 제재수위 강화

국가 연구비 부정 · 비리 관련 언론 보도



연구의 자율성 보장 및 청렴한 연구 생태계 조성

한국연구재단이 만들어갑니다.

